



#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
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

## 동물등록제

2013.1.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·군·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  
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등록지역: 전국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제외

##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

-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(수수료 2만원)
-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(수수료 1만5천원)
- ③ 등록인식표 부착(수수료 1만원)

##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?

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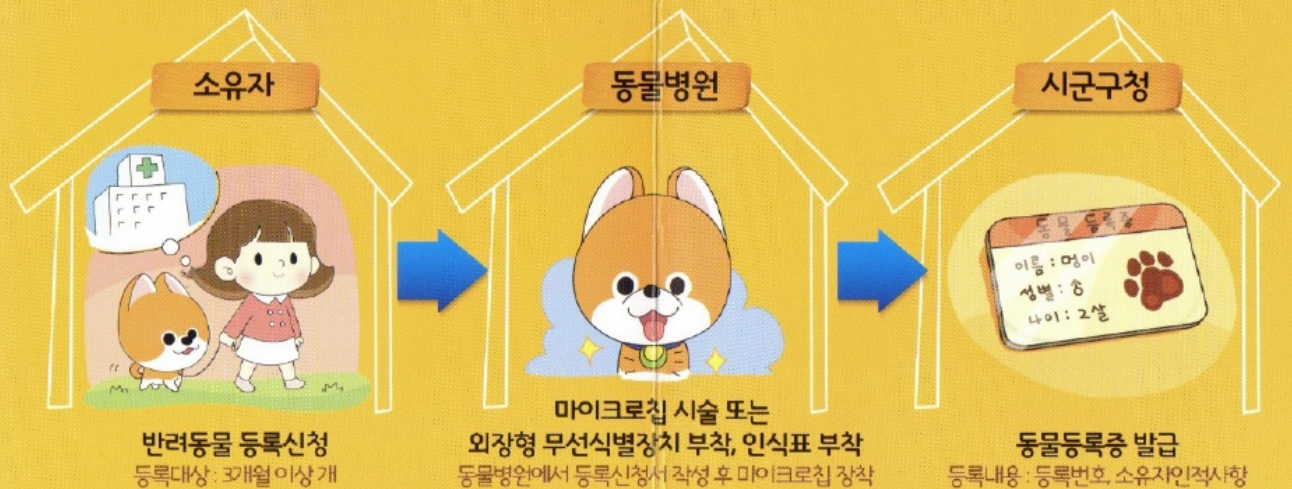
##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?

- ♥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(RFID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)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가기로, 동물용 의료가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♥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~15년전부터 마이크로칩 이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동물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암 등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.

## 동물인식표 부착(법 제13조)

- ① 소유자 성명
- ② 소유자의 전화번호
- ③ 동물등록번호(등록한 동물만 해당)

인식표 미부착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


www.  
animal.go.kr

## 동물보호 관리시스템

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



반려동물 분실신고



유기동물 입양안내



동물등록 확인



유기동물 주인찾기



전국 동물보호센터



동물보호법



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



동물보호 상담전화

# 1577-0954

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

(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)


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

동물등록제는  
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 
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 
최소한의 배려입니다!



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

www.qia.go.kr